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80호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8 7 7 호	보상계획 열람공고(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	치 수 과	2
○ 공 고 제 8 9 4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 생 교 육 과	8
○ 공 고 제 8 9 6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 생 교 육 과	18
○ 공 고 제 8 9 8 호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 생 교 육 과	25
○ 공 고 제 9 0 2 호	유홍주점 · 단란주점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고	식 품 위 생 과	35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77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3. 4. 26.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소하천(음실천)
 - 명 칭 :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
3. 사업의 규모
 - 축제 L=581m, 식생옹벽블럭 A= 5,441m², 교량 2개소, 배수통관 8개소 등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40-9번지 ~ 621-1번지
5.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6. 보상금 지급처 : 남동구청 치수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8-5번지 일대 33필지
 - 지 장 물 : 소하천 정비사업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계약 체결 후 현금 보상
- 협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제3자의 권리(압류, 근저당권 등)가 있는 경우, 계약전 제3자의 권리가 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23. 4. 26. ~ 2023. 5. 11.

11.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방법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 : 2022. 5. 12. ~ 2022. 6. 12.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남동구청(치수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④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및 작성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천일 : 2023. .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m)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 소	성 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 기재 및 인감 날인 필요(대리인은 불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12. 기타사항

- ①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안내문을 별도 통지할 계획입니다.
- ②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보상이 불필요할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합니다.
- ③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④ 미 등기 상태의 실제 토지소유자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남동구청 치수과)로 연락바랍니다.
- ⑥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보상이 불필요할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합니다.
- ⑦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치수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치수과에 문의(☎032-453-8464, 8463)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호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사유지				33필지		3,318									
	국·공유지				19필지		11,254									
	총계				52필지		14,572									
1	남동구	운연동			443	4	도	281	281	국(건설부)						
2	"	"			458	22	창	83	83	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		근저당권	
3	"	"			458	12	답	90	90	국(기획재정부)						
4	"	"			458	24	답	239	239	하*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운연동)					
5	"	"			458	25	답	289	289	국(건설부)						
6	"	"			458	15	답	192	192	윤*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37 태평아파트 ***호					
7	"	"			458	26	전	137	137	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		근저당권	
8	"	"			458	27	전	5	5	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		근저당권	
9	"	"			458	18	도	5	5	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		근저당권	
10	"	"			458	21	도	12	12	성*모	남구 연수동442-1					
11	"	"			458	19	도	207	207	국(건설부)						
12	"	"			458	20	도	45	45	국(건설교통부)						
13	"	"			459	120	도	28	28	장*경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 ***동 ****호(대야동,이편한세상시호센터하임)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반월공단지점)		근저당권	
14	"	"			459	125	전	211	211	이*원 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0번길 *-*, ***호(구월동,경창빌라)	인천원예농협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1-71(서창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지적분할진행중
15	"	"			459	126	전	82	82	김*래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7-7, ***동 ****호(배곧동, 시흥배곧 에스케이브)					
16	"	"			459	129	전	50	50	김*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한국아파트 ***동 ****					
17	"	"			459	136	전	46	46	이*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9번길 *-*(노현동)					
										이*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88, ****동***호(노현동, 현신일해피트리)					
										이*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9번길*-*(노현동)					
18	"	"			459	127	전	70	70	김*석 김*연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 ***동 ****호	군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8(선부동)		근저당권, 지상권	
19	"	"			459	132	전	101	101	장*경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 ***동 ****호(대야동,이편한세상시호센터하임)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반월공단지점)		근저당권	
20	"	"			459	133	전	64	64	유*규 김*원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 **, ***동 ***호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		근저당권	
21	"	"			459	134	전	129	129	김*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환화지점)		근저당권	
22	"	"			459	135	전	175	175	김*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23	"	"			459	130	전	72	72	경기도						
24	"	"			459	121	전	84	84	박*봉	연수구 동춘동 924-* 삼성아파트 *동 ****호					
25	"	"			459	122	전	17	17	박*봉	연수구 동춘동 924-* 삼성아파트 *동 ****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호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구	읍	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6	"	"	"	"	459	123	전	153	153	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인천논현힐스테이트)	남동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 (논현지점)	근저당권	지 적 분 할 진 행 중
27	"	"	"	"	459	124	전	39	39	금*희	인천광역시 논현동 563-2 동보아파트 ***동 ***호	남동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호구포지점)	근저당권	
28	"	"	"	"	459	128	전	42	42	윤*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343, ****동 ****호(동춘동, 송도파크레인 동일하이빌)	남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88(옥련동)	근저당권	
29	"	"	"	"	459	131	답	4	4	이*원 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0번길 **, ***호(구월동,경창빌라)	인천원예농 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1-71 (서창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30	"	"	"	"	463	1	임	203	203	조*순	중구 경동 ***-**				
31	"	"	"	"	464	2	답	443	443	이천*씨 ***파문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400번길 **(금광동)				
32	"	"	"	"	464	3	답	15	15	하*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운연동)				
33	"	"	"	"	486	8	전	308	308	윤*진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70번길 122, ***동***호(논현동, 동보아파트)				
34	"	"	"	"	486	9	전	22	2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충무공동)				
35	"	"	"	"	486	10	전	24	2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충무공동)				
36	"	"	"	"	489	74	전	2	2	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37	"	"	"	"	489	75	전	22	22	김*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3번길15, ***동***호 (성북동, 성동마을엘지빌리지2차)				
										김*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그린워크1차)				
38	"	"	"	"	489	76	전	21	21	김*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3번길15, ***동***호 (성북동, 성동마을엘지빌리지2차)				
										김*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그린워크1차)				
39	"	"	"	"	489	77	전	290	290	심*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20, ***호(서창동)	인천원예농 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새골로 174(송림동)(서창지점)	근저당권	
40	"	"	"	"	508	9	도	21	21	국(건설부)					
41	"	"	"	"	508	10	도	589	589	국(건설부)					
42	"	"	"	"	516	1	구	651	651	국(농림축산 식품부)					
43	"	"	"	"	516	15	구	49	49	국(농림축산 식품부)					
44	"	"	"	"	516	3	구	107	107	국(농림축산 식품부)					
45	"	"	"	"	516	16	구	34	34	국(농림축산 식품부)					
47	"	"	"	"	516	18	구	3,121	3,121	국(농림축산 식품부)					
48	"	"	"	"	516	20	구	4,484	4,484	국(농림축산 식품부)					
49	"	"	"	"	525	3	도	36.2	36.2	남동구					
50	"	"	"	"	527	3	도	55.1	55.1	남동구					
51	"	"	"	"	525	4	도	48.8	48.8	남동구					
52	"	"	"	"	527	4	도	59.9	59.9	남동구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 명	용도	구조및규격	면적(m2) 길이(m)	단위	수량	주소	성명	비고
	시	구	동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8-22	건축물		일반 철골구조	66㎡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임*수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8-26	구조물	간이 화장실	판넬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임*수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125	한전주				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0번길 **, ***호(구월동,경창빌라)	이*원 오*이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129	펜스		철재	31.8m			인천 계양구 계산동 355-1 한국아파트 ****-****	김*전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127	펜스		철재	3.6m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87, ***동 ****호 (월곶동, 월곶풍림1차아파트)	김*석 김*연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134	펜스		철재	23.8m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김*우	
					구조물		판넬	2.6㎡			"	"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135	펜스		철재	49.9m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김*우	
					비닐 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41.4㎡			"	"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9-122	구조물	관정	콘크리트	2.3㎡			연수구 동춘동 924-3 삼성아파트 *동 ****호	박*봉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63-1	펜스		철제, 메쉬	5.3m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	조*순	
					비닐 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99.7㎡			"	"	
					한전주				본	1	"	"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64-2	펜스		메쉬, 철제	8.6m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00번길 21(금광동)	이**씨** 공**회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6-8	펜스		철제	4.0m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70번길 122, ***동***호(논현동, 동보아파트)	윤*진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6-9	비닐 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23.5㎡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6-10	한전주				본	1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77	한전주				본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20, ***호(서창동)	심*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94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25.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2022.12.0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된 도서관법 조항 반영
(안 제1조, 제3조, 제20조, 제22조, 제39조, 제40조)
-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 조례 명칭 현행화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40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구 평생학습관 (3층) 평생교육과
- 연락처 : ☎ (032)453-6431 / FAX (032)453-589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도서관법」 제4조, 제29조, 제34조, 제46조, 제47조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2022.12.0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된 도서관법 조항 반영
(안 제1조, 제3조, 제20조, 제22조, 제39조, 제40조)
-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 조례 명칭 현행화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40조, 제41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도서관법」 제4조, 제29조, 제34조, 제46조, 제4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제29조”를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매체”를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8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27조, 제29조 및「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남동구 공공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 증진 도모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서관법」 제29조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1. ----- ----- ----- ----- ----- ----- ----- 자료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제3조(적용 범위) ----- ----- 제

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제20조(도서관의 기증 등) ① 법 제9
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관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표도
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 ⑥ (생략)

제39조(이용자 개인정보보호) ①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도서
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
하여 직원 근무수칙을 정하여 운
영하여야 하며, 도서관 직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0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① 법 제9조에 따른 기부금품은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은 제1
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

4조제2항제1호-----
-----.

제20조(도서관의 기증 등) ① 법 제4
7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

- 법 제34조제2항-----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이용자 개인정보보호) ①
법 제46조-----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① 법 제47조-----

-----.

② -----

--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예를, 물품과 시설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의 예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1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참고자료]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96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25.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새벽(06시~08시) 및 주말 야간(18시~22시) 시간의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직원들의 안전 및 시설관리비 절감을 위해 구립도서관 운영시간을 일부 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 이용시간 일부 변경(별표)
 - 자유열람실 운영시간 변경(소래·서창 도서관)
 - 06:00~22:00 ⇒ **08:00~22:00**

- 종합자료실 주말 운영시간 변경(남동논현.소래.서창 도서관)
- 09:00~22:00 ⇒ 09:00~18:00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구 평생학습관 (3층) 평생교육과
- 연 락 처 : ☎ (032)453-6431 / FAX (032)453-589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9조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새벽(06시~08시) 및 주말 야간(18시~22시) 시간의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직원들의 안전 및 시설관리비 절감을 위해 구립도서관 운영시간을 일부 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서관 이용시간 일부 변경(별표)
 - 자유열람실 운영시간 변경(소래·서창 도서관)
 - 06:00~22:00 ⇒ 08:00~22:00
 - 종합자료실 주말 운영시간 변경(남동논현·소래·서창 도서관)
 - 09:00~22:00 ⇒ 09:00~18:00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9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 (제4조 관련)

구 분	명 칭	실 명	운영시간
대표도서관	남동논현도서관	자유열람실	08:00 ~ 22: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수요일 20:00까지)
		종합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18:00)
		멀티미디어실	09:00 ~ 18:00
분관	소래도서관	자유열람실	08:00 ~ 22: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수요일 20:00까지)
		종합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18: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분관	서창도서관	자유열람실	08:00 ~ 22: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수요일 20:00까지)
		종합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18: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분관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주말 09:00~17:00)
분관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주말 09:00~17:00)

[참고자료]

□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9조(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98호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25.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2022.12.0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정의 변경(안 제2조)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기준 변경(안 제5조)
- 작은도서관 등록 규정 변경(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구 평생학습관 (3층) 평생교육과
- 연 락 처 : ☎ (032)453-6431 / FAX (032)453-589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도서관법」 제4조, 제36조, 제3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2022.12.0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정의 변경(안 제2조)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기준 변경(안 제5조)
- 작은도서관 등록 규정 변경(안 제6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도서관법」제4조, 제36조, 제38조
- 「도서관법 시행령」제2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서”를 “도서관 자료”로 한다.

1. 1,000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2.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제6조제1항 중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을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으로, “갓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을 “갓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으로, “있다”를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을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 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도서관 최소 연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① ----- -----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 1. 1,000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2.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삭 제>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 도서관 자료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
-----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 -----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한다.

② -----

--- 「도서관법」제38조제1항 -

-----.

[참고자료]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3-902호

유흥주점·단란주점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아래 유흥주점·단란주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4. 25.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유흥주점·단란주점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25. ~ 2023. 5. 10.(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영업허가 취소일
유흥주점	2008-0199761	노을	이**	남동구 경인로 607, 303,304호(간석동)	2011.08.02.	2023.04.25.
단란주점	1994-0199117	현대노래하는 메들리주점	정**	남동구 남동대로712번길 8(구월동)	2010.06.30.	2023.04.25.

4. 처분내용 : 영업허가 취소
5. 처분사유 : 사실상 폐업하여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경우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
7.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1